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31
----------	-------

발의연월일 : 2017. 12. 14.

발의자 : 이용주 · 송기석 · 박지원

주승용 · 박준영 · 장정숙

손금주 · 정동영 · 김종희

천정배 · 이찬열 · 최도자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를 민간투자자 위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공기업과 별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해양박람회특구 내 공공시설 유치 및 개발이 필요하고,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지정은 박람회재단이 별도 제한규정 없이 지정하고 있으나, 변경과 취소에 대해서는 「항만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항만법」에 따른 중앙 심의회의 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등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해양박람회특구 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호의 3 신설).
- 나.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의 변경과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항만법」 제59조제2항의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원활한 사후활용 관리를 위하여 지정권자와 변경·취소권자를 재단으로 일원화함(안 제17조의2 신설 및 안 제20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해양박람회특구 내 공공시설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 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의 변경과 취소에 대해서 「항만법」 준용규정이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이를 개선·정비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17조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규정”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재단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8조제1항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

## 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20조 전단 중 “제59조제2항 · 제3항”을 “제59조제3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